

제21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11. 2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941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19. 11. 15.(금)
- 라. 회부일자 : 2019. 11. 15.(금)

2. 제안이유

직무발명의 구 승계 시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등록보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공무원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 밖에 직무발명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발명자의 특허출원 관련 조항 보완(안 제10조)
- 나. 특허권 등록보상금 상향 조정(안 제15조)
- 다. 직무발명보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20조)
- 라. 발명자 등의 의무 관련 조항 보완(안 제28조)
-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발명진흥법」제10조, 제15조 및 제17조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

본 개정 조례(안)은 직무발명의 등록보상금 상향을 통한 인센티브 강화로 공무원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 밖에 직무발명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보상금 상향 조정(안15조)

- 공무원 직무발명을 구가 승계하여 구의 명의로 특허 등록 시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등록보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공무원 직무 발명의 활성화를 도모

구 분	등록보상금		비 고
	개정 전	개정 후	
특 허 권	50만원	100만원	
실 용 신 안 권	30만원	50만원	
디 자 인 권	20만원	30만원	

○ 직무발명보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안20조)

- 「발명진흥법」 제17조¹⁾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심의회의 구성 및 「발명진흥법시행령」 제7조의3제4항²⁾에 의거하여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을 같은 수로 하도록 함.

1)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7조의3(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 사용자등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종업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사용자위원: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와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일 것
2. 종업원위원: 종업원등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 사람일 것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문위원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이 합의하여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 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의 수는 각각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다. 검토결과

- 「발명진흥법」 및 「발명진흥법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무 발명보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를 하였고 직무 발명 등록 보상금 상향을 통해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공무원의 직무 발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관련 법령 각 1부.

2. 서울시 자치구별 등록보상금 조례 규정 현황 1부. 끝.

□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30.>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

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30., 2010. 1. 27.>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7. 30.>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7. 30.>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신설 2013. 7. 30.>

⑦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7. 30.>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7. 30.>

[제목개정 2013. 7. 30.]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발명자의 출원 등) ① 발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8. 28.>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8.>

제21조(발명자 등의 의무) ①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발명기관의 장은 국유특허권에 관한 심판청구서의 부분 또는 소장의 부분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28.>

붙임2

서울시 자치구별 등록보상금 조례 규정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자치단체명	등록보상금(단위 : 만원)			비 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장권)	
1	서울특별시	100	50	30	
2	종로구	50	30	20	
3	중구	100	50	30	
4	용산구	10	5	3	
5	성동구	50	30	20	
6	광진구	50	30	20	
7	동대문구	50	30	20	
8	중랑구	50	30	20	
9	성북구	50	30	20	
10	강북구	50	30	20	
11	도봉구	100	50	30	
12	노원구	50	30	20	
13	은평구	100	50	30	
14	서대문구	50	30	20	
15	마포구	50	30	20	
16	양천구	50	30	20	
17	강서구	50	30	20	
18	구로구	50	30	20	
19	금천구	50	30	20	
20	영등포구	100	50	30	
21	동작구	50	30	20	
22	관악구	50	30	20	
23	서초구	100	50	30	
24	강남구	50	30	20	
25	송파구	50	30	20	
26	강동구	50	30	20	